

제 11 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1.1조 정의

1. 이 장의 목적상,

국경간 서비스 공급 또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 나.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 다.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당사국의 공민이 공급하는 서비스,

그러나 제10.1조에 정의되어 있는 일방 당사국 영역에의 투자를 통하여 그 영역에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업이라 함은 제2.1조에 정의되어 있는 “기업” 및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일방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 및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며 그 영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그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금융서비스이라 함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금융서비스에 관한부속서 제5항 가호에 정의된 것을 포함하여,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직 서비스라 함은 그 공급을 위하여 전문화된 고등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훈련이나 경력이 요구되고, 서비스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상인 또는 선원 및 항공승무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량제한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부과하는 비차별적인 조치를 말한다.

- 가. 쿼타, 독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형태로 또는 다른 양적 수단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 또는
- 나. 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형태로 또는 다른 양적 수단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을 제한.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일방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리고

특수항공서비스라 함은 항공지도제작, 항공조사, 항공사진, 산림화재관리, 화재진압, 항공광고, 비행훈련, 항공검사 및 감시, 그리고 항공분사서비스를 말한다.

제11.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들에 의한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 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유통 및 운송체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라.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주재, 그리고
- 마. 서비스 공급조건으로 유가증권 또는 다른 형태의 재정적 보증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들은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수행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들을 말한다.

3. 이 장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 나.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항공서비스와 항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한 것들
 - (1) 운항중이 아닌 항공기의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2) 특수항공서비스,
 - (3)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낙하, 항공건설, 헬기를 이용한 별채, 항공관광, 그리고
 - (4) 컴퓨터예약시스템.
- 다. 일방 당사국 또는 국영기업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부조달,
- 라. 정부에 의해 지원된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한, 일방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에 의하여 제공된 보조금이나 교부금, 그리고
- 마. 법 집행, 교정서비스, 소득 보장이나 보험, 사회 보장이나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직업훈련, 보건 및 아동 보호와 같은 정부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

4. 제3항 마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 교정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직업훈련, 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이 정부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업적 기반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5.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그 영역내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타방 당사국의 공민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그러한 접근이나 고용과 관련하여 타방 당사국의 공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1.4조 현지 주재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서 대표사무소나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치 또는 유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내에 주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5조 유보

1. 제11.3조와 제11.4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의해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조치

- (1) 부속서 I의 양허표에 규정된 중앙정부 차원의 일방 당사국, 또는
- (2)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조치의 지속 또는 즉각적인 개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조치의 변경. 다만,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지기 직전보다 제11.3조 및 제11.4조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하다.

2. 제11.3조와 제11.4조는 부속서 II의 양허표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6조 수량제한

1. 각 당사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지하는 모든 수량제한을 부속서 III의 양허표에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채택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수량제한을 제외한 모든 수량제한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그 제한을 부속서 III의 양허표에 규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최소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부속서 III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자유화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에 노력한다.

제11.7조 향후 자유화

1. 이 협정 발효일 후 매 2년마다 자유무역위원회에 의하여 개최될 향후 협상을 통하여 양 당사국은 상호이익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전체적인 균형을 보장하면서, 제11.5조에 합치되게 유보된 잔존 제한을 축소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자유화를 보다 심화시켜 나간다.

2. 일방 당사국이 제11.5조에 합치하게 비당사국과의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그 당사국은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확보하면서 그 자유화에 따라 부여된 대우에 대해 협상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타방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제11.8조 비차별조치의 자유화

각 당사국은 부속서 IV의 양허표에 수량제한, 면허요건, 이행요건 또는 그 밖의 비차별적인 조치들을 자유화시키기 위한 약속을 규정한다.

제11.9조 절차

자유무역위원회는 다음을 위한 절차를 확립한다.

- 가. 당사국이 다음을 통지하고 이를 자국의 관련 양허표에 포함
 - (1)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량제한,
 - (2) 제11.8조에 의거한 약속,
 - (3) 제11.5조제1항 다호에 언급된 조치의 수정, 그리고
- 나. 자유화 확대를 위하여 유보, 수량제한 또는 약속에 대한 협의.

제11.10조 면허 및 증명서 발급

1.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타방 당사국의 공민들에 대한 면허나 증명서 발급요건 및 절차와 관련한 조치가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할 것을 노력한다.
 -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자격 및 능력과 같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기반으로 할 것,
 -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그리고
 - 다.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을 것.
2. 일방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또는 협정 또는 약정에 의해 비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획득한 교육, 경력, 면허나 증명서를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획득된 교육, 경력, 면허 또는 증명서 역시 인정되어야 함을 입증할 적절한 기회나 또는 이러한 인정에 상응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3. 부속서 11.9는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나 인증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11.11조 혜택의 부인

제17.4조 및 제19.4조에 따른 사전통지와 협의를 조건으로,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고 또한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당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부속서 11.10 전문직 서비스

목적

1. 이 부속서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문직 서비스 공급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면허 및 증명서 발급 신청의 처리

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국민에 의한 면허 또는 인증서 발급 신청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일내에 자국의 관할 당국이 다음을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 가. 신청이 완전한 경우 동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 또는
- 나. 신청이 완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의 처리상황과 자국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정보에 대하여 부당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

전문적 표준의 개발

3.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의 관련기관들이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와 인증에 관한 상호 수용가능한 표준과 기준을 개발하고 이러한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자유무역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장려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표준과 기준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개발될 수 있다.

- 가. 교육 - 학교 또는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인가,
- 나. 시험 - 구술시험 및 면접과 같은 대안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면허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 다. 경력 -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력의 기간과 내용,
- 라. 행동 및 윤리 - 직업행동표준과 그러한 표준과의 비합치성에 대한 징계조치의 내용,
- 마. 전문성 개발 및 자격증의 갱신 - 전문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 교육 및 지속적 요건,
- 바. 서비스활동 범위 -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 또는 한계,
- 사. 현지 지식 - 해당 지역의 법률, 규정, 언어, 지리 또는 기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식 요건, 그리고
- 아. 소비자 보호 -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보, 직업책임보험, 고객환불기금을 포함한, 주재 요건에 대한 대안.

5. 제3항에서 언급된 권고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토하여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기한내에 적절한 경우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각국의 주무당국을 장려한다.

일시 허가

6.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임시면허의 발급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자국 영역내의 관련 기관을 장려한다.

검토

7. 자유무역위원회는 최소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 절의 이행에 대해 검토한다.